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세 입

(1) 세입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01%인 66억 9,968만 4천원이 증가된 582억 741만 2천원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제1회 추경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58,207,412	51,507,728	6,699,684	13.01

(2) 세입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 지방세수입에서 6억 6,300만원 증액
- 세외수입에서 33억 2,930만 5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에서 1,000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22억 5,975만 2천원 증액
- 보조금에서 4억 3,76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 출

(1) 세출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66%인 39억 8,338만 7천원이 증가된 413억 4,603만 5천원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제1회 추경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41,346,035	37,362,648	3,983,387	10.66

(2) 세출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기획감사실	15,222,418	14,379,246	843,172	5.86
정보홍보담당관	1,038,489	916,798	121,691	13.27
총무과	5,858,579	5,310,396	548,183	10.32
주민자치과	4,866,958	4,477,803	389,155	8.69
지방세과	413,479	375,695	37,784	10.06
경영회계과	1,689,217	1,216,256	472,961	38.89
민원봉사과	172,369	150,879	21,490	14.24
보건소	3,803,939	3,532,988	270,951	7.67
문예시설관리사업소	1,208,624	611,609	597,015	97.61
동	7,071,963	6,390,978	680,985	10.66
합 계	41,346,035	37,362,648	3,983,387	10.66

II. 검토의견

서구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특별교부세·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상비 및 동 순회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01%인 66억 9,968만 4천원이 증가된 582억 7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66%인 39억 8,338만 7천원이 증가된 413억 4,60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세 입	58,207,412	51,507,728	6,699,684	13.01
세 출	41,346,035	37,362,648	3,983,387	10.66

자세한 것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각종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부활된 것은 14건으로서 4,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심의 때마다 수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삭감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는 사례도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편성 요건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성립후의 여건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이라 생각하며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성립 후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일단 의회가 삭감한 경비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1>부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편성안	본예산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 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0	64,800	7,200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협의	14,000	12,600	1,400	구청장
·구정유공자와 간담회	8,000	7,200	800	
·유관기관, 단체업무협의 및 협조 도모	10,000	9,000	1,000	
·각계 직능대표자와의 간담회	10,000	9,000	1,000	
·문화예술 진흥활동 추진	5,000	4,500	500	
·구정 주요 시책 추진 및 의견수렴	15,000	13,500	1,500	
·현장 확인행정 원할 추진	10,000	9,000	1,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	81,000	9,000	
·구청장	53,000	47,700	5,300	총무과
·부구청장	37,000	33,300	3,700	총무과
급량비(POOL)	10,000	5,000	5,000	기획감사실
국내여비(POOL)	20,000	10,000	5,000	기획감사실
국외여비(POOL)	50,000	30,000	10,000	기획감사실
노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1대)	7,000	0	5,000	총무과
작명, 주례, 풍수 등 봉사도우미 실비보상금	12,000	6,000	3,000(성립전)	주민자치과
합 계(14건)	261,000	196,800	44,200	

○ 예산의 성립전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예산의 성립전집행액은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서창동 서창마을회관 신축, 서창동 게이트볼장 설치 및 시민편익증진시책 추진사업 중 시책담당자 여비 외 15건 등 총 18건에 9,835만 원으로서 소요재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 사업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교부금에 의한 예산의 성립전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2> 예산의 성립전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건수	집행내역	비고
총 무 과	2건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40,000)※ ·서창동 서창마을회관 신축(115,000)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주민자치과	1건	·서창동 게이트볼장 설치(25,000)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시민편익증진시책 추진사업비 성립전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성립전 사용액
총무과	○ 시책담당자 여비	900
	○ 선진문화시민운동 - 민간단체보조금 - 홍보물	3,000 1,000
	○ 친절봉사운동 - 현장제정 홍보현황판 제작 - 고객 평가함 제작 - 친절도 평가 용역비	2,320 220 1,200
주민자치과	○ 시책담당자 여비	1,200
	○ 365 생활민원센터 운영 -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직원시상금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현장활동 급식비 - 주민생활도우미제 봉사도우미 보상금 - 생활행정모니터요원 급식비	600 600 3,000 400
민원봉사과	○ 친절봉사운동 - 우수부서, 직원시상금 - 무료 가훈써주기 서예가 보상금 - 홍보현수막 제작 - 지필묵 구입 -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 아기탄생 축하엽서 구입 - 민원안내 상담창구 시설	700 900 150 500 1,960 960 2,000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상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예산의

성립전집행입니다(지방재정법 제36조). 다만 이 제도는 재정에 관한 대원칙인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서, 그 요건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행케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과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비 중 정부가 부담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의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은 자치단체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성립전집행을 이처럼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하도록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성립전 집행이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재정의회주의 원칙상 성립전 예산집행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POOL로 계상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관리 항 자산취득비 목에 시책추진 자산취득비로써 1천만을 증액하여 2천만을 POOL로 계상하였고, 또한 동예산 총무관리 항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POOL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 하겠으나, 재정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POOI비적 성격을 갖는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유사목적의 예산을 항을 달리하여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중복편성은 예산심의의 적정성을 해치는 행위라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자체사업예산 중 신규계상 및 증액계상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나 사용 가능한 물품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린터, FAX, TV, 녹화기 및 복사기 등은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기들의 보유대수와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입 여부를 심의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컴퓨터 구입의 경우 기획감사실은 1대당 17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정보홍보담당관은 1대당 151만 3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본예산에서는 1대당 133만 7천2백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계상 편성한 것보다 단가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급형 컴퓨터는 날이 갈수록 상당한 시세 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의 경우 보급형인 시종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계상하고 있는 것은 선택사양을 일반 보급형이 아닌 고급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의 사례가 아닌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계상된 자산및물품취득비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부 기 내 역	신규 및 증액편성액
기획감사실	○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 냉·난방기(15평형) 2,000 - 프린터(1대) 1,000 - FAX(1대) 900 - 컴퓨터(2대) 3,400 - 발간실 진공청소기(대형) 855 - 불박이장 설치 7,000	
정보홍보담당관	○ 컴퓨터 구입(80대)※ 121,040(200,046: 36대) ○ 구정홍보자료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1대) 500 ○ 브리핑룸 물품구입 - TV 500 - 녹화기(VTR) 500 - 불박이장 700	
총무과	○ 당직실 물품구입 6,500 ○ 노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1대) 5,000 ○ 직장협의회사무실 불박이장 설치 2,000	
경영회계과	○ 자동차 대체구입 - 1톤 더블 캡('96년 구입) 13,000 - 중형승용차(부구청장 '97년 구입)※※ 24,700 ○ 사무용집기 구입 - 책상(10각 → 25각) 1,950 - 의자(20각 → 40각) 2,000 ○ 노후복사기 대체구입(1대) 7,000	
민원봉사과	○ 호적프린터구입(과목변경, 2대) 1,260 ○ 민원서비스전용 팩스구입(1대, 민원홀) 1,000 ○ 민원편익시설 및 지적서고 정비 - 민원홀 대기용 의자교체(과목변경) 3,190 - 민원인 필기용 원탁구입(과목변경) 990 - 지적서고 도면 및 설계용 탁자구입(과목변경) 1,000	
보 건 소	○ 치아홈메우기사업(과목변경) - 광중합기(1대) 2,520 ○ 차량방역장비 -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1대) 3,300 - 차량용 연막기(1대) 3,500	
동 예 산	○ 행정장비 구입 및 확충(8건) 32,937 ○ 자산 및 물품취득비(POOL) 1,000 ○ 금호동 행정장비 구입(3건) 3,000 ○ 치평동 행정장비 구입(3건) 2,846 ○ 풍암동 행정장비 구입(13건) 13,784	

※ 본예산에서는 컴퓨터 구입비로써 대당 1,337,2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대당 1,513,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음.

※※ 중형승용차구입비로써 본예산안에는 1,620만원(총무국장)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2,470만원(부구청장)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음

○ 의회의결 전에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유덕동 사무소 건립 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신규계상된 유덕동 사무소 건립비 4억원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과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비추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일정규모(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이상의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먼저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계상된 유덕동 사무소 신축사업비는 유덕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의회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이 있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